

투 고 규 정

제1조(본 규정의 목적) 본 규정은 본 학회 정관 제4조 2항에 명시된 회지 발간사업을 위한 투고요령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고의 종류) 본 회지에 게재되는 원고의 종류는 전과정평가 관련분야의 연구논문(Research Paper), 총설(Review Paper), 단보(Technical Note), 기술자료(Technical Information), 특집(Special Feature), 토의(Discussion) 등으로 하며 본 학회지에 투고되기 전에 다른 학술잡지 및 기타 출판물에 발표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하며 각각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구분된다.

1. 연구논문 : 전과정평가 관련분야의 독창적인 연구결과로서 학술적 가치가 있는 내용과 결론 혹은 사실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총설 : 전과정평가 관련 전문분야의 연구현황과 문제점 및 향후의 과제 등에 관한 문헌고찰을 포함하며 그 자체로서 종합적이고 독창적인 해석을 통하여 학술적으로 가치 있는 결론을 제시하여야 한다.
3. 단보 : 창의적이면서도 단편적인 연구결과로서 새로운 사실과 학술적으로 가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4. 기술자료 : 전과정평가 관련 전문분야의 기술적인 자료로서 실용적이면서도 새로운 사실과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5. 특집 : 전과정평가관련 전문분야별로 시기적절한 과제에 대하여 편집위원회에서 주제와 집필자를 선정하고 원고를 위촉한다.
6. 토의 : 본 학회지에 기존 발표된 논문 등에 관련된 의견, 질문 및 질문에의 회답을 포함한다. 단, 토의 대상 논문은 2년 이내에 발표된 논문에 한한다.

제3조(투고자격) 본 학회지에의 투고자격은 본 학회 회원에 한한다. 단, 회원과의 공동연구논문 및 특집 등은 예외로 한다.

제4조(원고심사) 본 학회지에 게재되는 원고의 심사, 채택여부, 게재순서 및 인쇄제제는 본 학회회원으로 구성된 편집위원회에 일임하여야 하며, 편집위원회는 별도로 정한 논문심사규정에 따라 심사하여 필요할 경우 원고의 내용이 크게 변경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원고작성 및 분량)

1. 원고작성은 국문 또는 영문으로 하되 반드시 국문초록(요약문)과 영문초록(ABSTRACT) 및 다섯 단어 이내의 주제어(Key word)가 국문과 영문초록 하단에 각각 첨부되어야 한다. 국문원고는 한글사용을 권장하되 인명, 지명, 잡지명과같이 어의가 혼동되기 쉬운 것은 한자를 사용할 수 있다. 한글 표기가 어려운 학술용어 또는 물질명은 영문으로 표기 할 수 있다.
2. 원고의 작성은 A4 용지 (296mm×210mm)에 작성하며, 한글과 Microsoft word processor를 이용하여 작성하고 글씨체는 한글(신명조), 영문(Times New Roman), 줄간격은 180%(MS word인 경우 18pt), 글자크기는 10point로 하며, 상하 각 변에서 30mm, 좌우 각 변에서 25mm씩 여백을 남긴다.
3. 본문, 그림, 표, 사진 등 모든 내용을 포함하여 제5조 2항에 의거하여 작성된 원고는 학회지 쪽수로 10쪽(본지 인쇄기준) 이내로 한다.

제6조(원고의 형식)

1. 원고의 표지(제1면)에는 제목, 연구자 이름, 소속을 본문에 사용된 언어에 상관없이 국문과 영문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연구자의 소속과 주소는 해당 연구자의 이름에 *표를 하고 소정의 위치에 이를 표기한다.
2. 국문 연구논문은 다음 순서대로 작성한다.
 - 2.1 한글 논문제목
 - 2.2 한글 저자명, 소속기관명
 - 2.3 영문 논문제목
 - 2.4 영문 저자명(Fullname), 소속기관명, e-mail address
 - 2.5 영문 초록 (Abstract)
 - 2.6 국문 초록 (요약문)

- 2.7 본문 (서론, 이론, 실험방법, 결과 및 고찰, 결론)
- 2.8 사사
- 2.9 기호설명
- 2.10 참고문헌
- 3. 영문 연구논문은 다음 순서대로 작성한다.
 - 3.1 영문 논문제목
 - 3.2 영문 저자명(Fullname), 소속기관명, e-mail address
 - 3.3 국문 초록 (요약문)
 - 3.4 Abstract
 - 3.5 본문 (Introduction, Background, Method, Result and Discussion, Conclusion)
 - 3.6 Acknowledgement
 - 3.7 Nomenclature
 - 3.8 References
- 4. 국.영문초록은 논문의 목적과 주요성적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동시에 본문과 분리하여도 의미가 통할 수 있어야 한다. 단, 특집, 단보, 기술자료 등에는 국.영문초록을 반드시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 5. 본문(서론에서 결론까지)의 구분은 아래에 예시한 바와 같이 아라비아 숫자로 표현하며 내용이 간단. 명료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예) 1, 2, 3,……, 1.1, 1.2,……, 1.1.1, 1.1.2,……, (1), (2), (3),…
- 6. 원고 본문중의 표현은 가능한 한 학술용어 사용을 권장하며, 고유명사는 원어로, 수량은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위는 SI단위계 사용을 원칙적으로 권장하나 mg/ℓ와 같이 많이 사용되는 농도단위는 C.G.S.단위의 기호를 사용할 수도 있다.

제7조(표와 그림의 표기방법)

- 1. 표(Table)와 그림(Fig.)의 제목과 설명은 영문으로 하되 본문을 참고하지 않아도 그 내용을 알 수 있어야 하며 아라비아 숫자로 일련번호를 붙여야 한다(예 : Table 1, Table 2, Fig. 1, Fig. 2).
- 2. 표(Table)의 경우 제목의 단어중 명사에 한해서 첫 글자를 대문자로 하며 제목 끝에 마침표를 붙이지 아니한다.

(예) Table 1. Normalization Values of the Impact Categories
- 3. 그림(Fig.)의 경우 제목의 첫 글자만 대문자로 하고 나머지는 일반 문장과 같은 방식으로 표현하며 마침표를 붙인다.

(예) Fig. 1. Process tree of the product system.

제8조(참고문헌 표기방법)

- 1. 참고문헌은 본문중에 어깨부호로서 표기하고(예 : …의 연구결과¹⁾와 일치하는…), 인용순서에 따라 배열하며 일반적인 배열순서는 아래 예시와 같이 번호, 저자명, 논문제목, 잡지명, 서명, 판수, 출판사명, 발행지, 권(호), 면(출판년도)의 순서로 기술함을 원칙으로 한다.
- 2. 논문(Journal Articles)일 경우 저자(서명인일 경우 아래 예시를 참고), “논문제목”, 학술잡지명(영문일 경우 이탤릭체로 표기), 권(호), 면수(시작과 끝의 숫자만 표기), 연도(괄호 안에 표기)의 순으로 기술한다.

(예) 1. 홍길동, 김이박, “열린 고리 재활용 시스템의 질저하를 고려한 할당”, 한국전과정평가학회지, 1(1), 143~148(1998).

2. Boguski, T, Hunt, R., and Franklin, W., "General mathematical models for LCI recycling", *Resources, Conservation and Recycling*, 12, 147~163(1994).
- 3. 학술회의 Proceeding일 경우 저자, “논문제목”, 학술회의명(영문일 경우 이탤릭체로 표기), 발행처, 도시명, 면수(소문자 pp를 붙임), 연도(괄호안에)의 순서로 기술한다.

(예) 3. 김선달, “모니터의 LCA”, 전과정평가 학회 제 1회 국제 심포지움 논문집, 전과정평가 학회, 서울, pp. 74~96(1998).

4. Daughtrey, H. E., Williams, D. F. and Murphy, N. T., "Comparison of methods for

valuation", in *Proceedings of the 1998 U. S. EPA Valuation Symposium on LCA*, U. S. EPA, Pittsburgh, pp. 170 ~ 175(1998).

4. 단행본일 경우 저자, 서명(영문일 경우 이탤릭체로 표기), 출판판수, 권수(있는 경우), 편집자명(있는 경우), 출판년도(괄호안에)의 순으로 기술한다.

(예) 5. 이도사, 박혁거세, 전과정평가지침, 3판, 등대사, 서울, pp.294 ~ 297(1998).

6. Martin, E. J. and Johnson, J. H. Jr., *Eco-efficiency*, 2nd Ed., *McGraw-Hill*, New York, pp. 391 ~ 410(1998).

5. 편집된 단행본 속의 일부(Chapter)를 인용할 경우, 저자, "인용부분의 제목", 단행본 서명(영문일 경우 이탤릭체로 표기), 편집저자명(괄호안에 1인이면 Ed., 2인 이상이면 Eds.를 표기), 출판사명, 출판자명, 면수(소문자 pp를 붙임), 출판년도(괄호안에)의 순서로 기재한다.

(예) 7. Chelay, C. D. and Elwell, C. E., "Introduction to Random Sampling", *Evaluation of Methods for Statistical Sampling*, Biero, V. and Putnam, G. E.(Eds.), Universal Publications Inc., New York, pp. 11 ~ 23(1993).

6. 저자나 편집자의 이름 기재는 저자수에 관계없이 전일 표기한다.

7. 정기간행물의 약어는 영문의 경우 Chemical Abstract에 준하며 국문 또는 일어인 경우에는 원명을 그대로 쓴다.

8. Internet상의 자료는 인용한 부분의 full address로 표기한다.

(예) <http://www.epa.gov/appcdwww/crb/apb/msw-lca.htm>

제9조(원고접수와 채택)

1. 연구논문, 총설의 원고는 3부(원본 1부와 사본 2부)와 그 내용이 담긴 디스켓 1매를 제출하여야 하며 소정의 심사료(제11조 참고)를 원고 제출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기타 원고는 원본 1부를 제출한다.

2. 투고원고의 접수일은 본 회에 도착한 날로 하며 채택일은 심사가 완료된 날로 한다.

3. 제출된 원고는 저자에게 반송하지 아니한다.

제10조(교정)

1. 교정은 초교에 한하여 저자가 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초교중 인쇄상의 오류이외의 자구수정, 내용삽입 혹은 변경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2. 편집위원회는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에서 교정할 수 있다.

제11조(심사료와 게재료)

1. 연구논문과 총설의 심사료는 40,000원이며 본 회지에 투고를 희망하는 모든 원고에 대하여 회원저자 중 당해연도 회비 미납자는 회비 납부 후에 원고를 접수하며 비회원 공동저자인 경우 당해연도의 정회원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게재료는 모든 원고에 대하여 인쇄면당 10,000원이며, 8면 초과 시는 초과면당 30,000원으로 한다. 단, 아래 각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실비를 추가로 징수한다.

○ 사진판에 아트를 사용하는 경우

○ 동판을 사용할 경우

○ 불결한 도면을 정정 또는 정서할 경우

○ 20부 이상의 별쇄를 요구하거나 또는 별쇄의 표지를 요구할 경우

제12조(저작권) 본 회지에 게재되는 모든 원고에 대한 저작권은 편집위원회가 갖는다.

제13조(위임사항)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결정은 편집위원회에 위임한다.

제14조(규정의 발효) 이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윤리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사)한국전과정평가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회원 및 학회 주관 출판물의 보편적 연구 윤리를 확보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스스로의 위상과 긍지를 높이고,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표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본 규정은 학회 주관의 학술행사, 연구사업, 학술지 등 출판사업, 교육사업 등의 학술 활동에 참여하는 연구자 및 연구논문을 제출하는 연구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 (적용범위) 본 학회의 연구윤리 범위는 특정 연구 분야의 정직성, 진실성과 정확성에 관하여 국가기관의 상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본 규정에서 제시하는 연구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는 연구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등의 행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이외에도 중복 발표 등과 같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를 말한다.

제5조 (검증시효) 제보는 접수일로부터 만 3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단 3년 이전의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피조사자가 그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여 후속 연구가 진행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 (제보자의 권리 보호)

1. 제보자는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학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2. 제보자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 과제명 또는 논문명,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한다.
3.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 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학회는 제보자가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한다.
4.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7조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1. 피조사자는 제보 또는 학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해우이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자를 말한다.
2. 학회는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며, 부정행위 의혹에 관한 판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3. 피조사자는 부정행위의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알고자 할 경우 이를 학회에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및 권한) 본 학회의 연구윤리위원회는 본 학회 이사회 및 편집위원회가 겸임한다. 단 피조사자는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과 준비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제9조 (연구 부정행위의 조사 및 결과 보고) 본 학회의 학술 활동과 관련한 연구윤리 문제가 접수되면 학회장은 연구윤리위원회에 사안을 통보하고, 조사와 결과보고를 의뢰한다.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 부정행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6개월 이내에 보고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음 각 항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1. 제보의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3. 조사위원회 조사위원 명단 및 회의록
4. 해당 연구에서의 부정행위의 범위와 사실 여부 판단
5. 관련 증거 및 증인

제10조 (검증원칙) 부정행위 사실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연구윤리위원회에 있으며,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절차를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이사회에서는 동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조사결과 보고에 대한 후속조치) 연구 부정행위가 확정될 경우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후속조치를 이사회 의결에 따라 취할 수 있다.

1. 연구결과에 대한 취소 또는 수정을 요구
2. 연구 결과물의 게재 취소 (기 출간물의 경우 유관기관에 취소 공문 발송)
3. 적정 기간 회원자격 상실 또는 제명
4. 소속기관장에 통보

제12조 (윤리 규정의 준수 및 실시) 본 학회 및 출판자는 본 윤리 규정이 정한 규정과 윤리강령에 적시된 규범 및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원칙을 성실히 준수한다.

부기

1. 본 규정은 당 학회 이사회 심의를 거쳐 개정된 날로부터 확정, 시행한다.
2. 본 규정의 해석 및 재검토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서 위원회를 설치한다.

논문심사규정

제1조 한국전과정평가학회에 투고되는 연구논문과 총설의 심사 및 채택은 본 규정에 따른다.

제2조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위촉한다. 단, 편집위원장이 저자로 된 논문은 편집위원중 한사람에게 심사위원 선정을 위촉한다.

제3조 편집위원회에 논문이 도착하면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들에게 즉시 발송한다.

제4조 모든 논문은 2명 이상의 심사를 거쳐 이의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제5조 심사위원은 심사위촉 후 14일 이내에 위촉받은 원고를 심사하고, 심사의견을 원고와 함께 본회에 발송해야 한다.

제6조 본회는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을 받은 후 1주일 이내에 그 사본을 저자에게 발송한다.

제7조 심사위원의 명단은 일체 발표하지 아니하며, 심사위원에게는 저자를 비밀로 한다.

제8조 심사내용은 저자 이외에는 공표하지 아니한다.

제9조 심사결과는 “게재가”, “수정”, 또는 “게재불가”의 3종으로 구분된다.

1. “게재가”로 판정된 논문은 이를 수정 없이 채택하며, 혹시 심사위원이 단편적인 수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저자가 수정한 후 편집위원장이 이를 확인하여 채택한다.
2. “수정”으로 판정된 논문은 해당사항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이를 수정 또는 보충하도록 요구한다. 저자가 수정한 논문은 심사위원이 재심을 한 후 적합 또는 수정여부를 판정하여 “게재가”나 “게재불가”를 구분한다.

제10조 논문의 내용이 아래의 어느 한 항에 해당한다고 심사위원이 인정할 경우에는 “게재불가”로 판정하고,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독창성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
2. 원고내용에 저자가 알아낸 사실 또는 착상이 뚜렷하지 않거나, 기지의 사실이라도 이용된 문헌에 나타나 있는 방법 또는 관점과 다른 각도에서 이를 종합분석 또는 고찰한 것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
3. 기타 본 회지에 게재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1조 심사위원중 한명이 “게재가” 다른 한명이 “게재불가”로 판명하였을 경우에는 9조와 10조에 구애됨 없이 제3의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이 경우 제3의 심사위원이 “게재가”나 “게재불가”로 판정되면, 이 판정에 따라 논문을 처리하고 만일, 가부 결정을 확실히 할 수 없을 경우에는 편집위원회가 이를 심의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제12조 외국어로 작성된 원고로서 문맥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문법적으로 그 해독이 곤란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 또는 편집위원장이 저자에게 보완하여 투고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제13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투고된 논문은 최종 게재여부를 신속히 결정한다.

제14조 이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